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당별 배정지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60호)

2025.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민전 · 인요한 · 강선영 · 이종배 · 서천호 · 김상훈 ·
배준영 · 박충권 · 조배숙 · 조정훈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6. 12.

3. 회 부 일 : 2025. 6. 13.

※ 의안번호 : 1076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이 없음. 그 결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배분된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가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院) 구성이 지연되어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별 배정지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상임위원장 직위 배분을 둘러싼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관행

에 의존한 원 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당별 배정지수”의 산식을 정의하고, 정당별 배정지수가 큰 정당부터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제도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생략)	제41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②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상임위원장 후보-----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41조의2(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 등) ①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정당별 배정지수가 큰 정당부터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이 종료될 때까지 순서대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한다. $\text{정당별 배정지수} = \frac{\text{정당별 소속 의원 수}}{(1 + \text{정당별 배분받은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정당별 배

현행	개정안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⑤ · ⑥ (생략)	<u>정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정당이 먼저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의장이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순서를 정한다.</u> <u>②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은 제1항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 상임위원장 직위에 대하여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정한다.</u> <u>③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해당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분받은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은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정하여야 한다.</u>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 -----. ⑤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상임위원장을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고, 의장 및 부의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후보자 등록을 요하지 않는 호선(互選) 형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배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함.

국회는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간 원(院)구성 합의를 통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배분해 왔으나, 각 교섭단체별로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가 정해지더라도 어떤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에 배분할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¹⁾.

이에 개정안은 “정당별 배정지수”를 “정당별 소속 의원 수 ÷ (1 + 정당별 배분받은 상임위원장 직위 수)”로 정의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정당별 배정지수가 큰 정당부터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이 종료될 때까지 순서대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하여 관행에 의존한 원구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임.

$\text{정당별 배정지수} = \frac{\text{정당별 소속 의원 수}}{(1 + \text{정당별 배분받은 상임위원장 직위의 수})}$
--

개정안에 따른 “정당별 배정지수”는 정당명부식비례제(proportional represnatation)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각 정당의 득표 수를 의석 수로 전환하는 당선자 결정공식의 하나인 이른바 ‘동트식(D’Hondt

1) 원구성은 국회가 회의 및 의결체로서 기능하기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의장단 선출 및 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로 완료되는데, 제13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원구성에 평균 41.4일이 소요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704호: 「제21대 국회 원(院) 구성 일정과 쟁점」”, 2020.p.2)

method)’²⁾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석수를 기준으로 하되, 이미 많이 배정된 정당은 다음 순서에서 후순위가 되도록 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배정지수가 가장 높으므로 우선 선택권을 가지게 됨. 소속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우선적으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1개 선택하게 되면 분모가 1 증가하게 되어 다음 순번에서는 배정지수가 낮아지고 우선순위도 떨어지게 됨. 개정안은 이러한 과정을 차례대로 반복하면서 각 정당이 소속의원 수 비례에 맞는 숫자의 상임위원장 직위를 배정받고 선호하는 상임위원회를 순서대로 선택하도록 설계한 것임.

2025년 7월 3일 현재 각 정당별 소속의원 수를 기준으로 개정안의 정당별 배정지수에 따라 18개의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포함)을 배분해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하 생략)의 순으로 상임위원장 직위 선택권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의 상임위원장직을 각각 배정받게 됨.

[표-2] 정당별 배정지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예시*

배분 회차	더불어 민주당 (167명)	국민의힘 (107명)	조국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 소득당 (1명)	사회 민주당 (1명)
1	<u>167.0</u>	107	12	4	3	1	1
2	83.5	<u>107.0</u>	12	4	3	1	1
3	<u>83.5</u>	53.5	12	4	3	1	1

2) 동트식은 1, 2, 3 등의 순차적인 정수로 정당의 득표를 나눈 몫이 큰 순으로 총의석을 채우는 방식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285호: 「네덜란드 하원선거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2017. p.2)

배분 회차	더불어 민주당 (167명)	국민의힘 (107명)	조국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 소득당 (1명)	사회 민주당 (1명)
4	<u>55.67</u>	53.5	12	4	3	1	1
5	41.75	<u>53.5</u>	12	4	3	1	1
6	<u>41.75</u>	35.67	12	4	3	1	1
7	33.4	<u>35.67</u>	12	4	3	1	1
8	<u>33.4</u>	26.75	12	4	3	1	1
9	<u>27.83</u>	26.75	12	4	3	1	1
10	23.86	<u>26.75</u>	12	4	3	1	1
11	<u>23.86</u>	21.4	12	4	3	1	1
12	20.88	<u>21.4</u>	12	4	3	1	1
13	<u>20.88</u>	17.83	12	4	3	1	1
14	<u>18.56</u>	17.83	12	4	3	1	1
15	16.7	<u>17.83</u>	12	4	3	1	1
16	<u>16.7</u>	15.29	12	4	3	1	1
17	15.18	<u>15.29</u>	12	4	3	1	1
18	<u>15.18</u>	13.38	12	4	3	1	1
위원장 수	11개	7개	—	—	—	—	—

* 2025년 7월 3일 현재 기준 정당별 소속의원 수 기준으로 작성한 예시임.

개정안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에 비례하여 상임위원장 수가 배분되고 상임위원장을 선택하는 순서가 결정되므로 원구성의 불확실성과 지연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배분 시 정당별 소속 의원 수 외 다른 요소의 고려 또는 적용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경우 향후의 여건 변화나 사정변경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³⁾을

3) 참고로, 제16대 및 제18대 국회에서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음.

고려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개정안은 현행 국회 원구성 협상의 취지와 개정안의 기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참고로,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문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김희정의원안 및 박홍근의원안)이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3] 유사취지 법률안의 주요내용

김희정의원안 (2024.6.5.)	박홍근의원안 (2024.6.26.)	개정안
◦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중 원내 다수 정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u>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반영하여 배분함.</u>	◦ <u>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그 배분된 몫만큼의 상임위원장을 우선적으로 가저가도록 함.</u>	◦ “ <u>정당별 배정지수</u> ”의 산식을 정의하고, <u>정당별 배정지수가 큰 정당부터 순서대로 상임위원장 직위를 선택하도록 함.</u>

문 의 처

02)6788-5014